

# 수의계약의 적법성 및 책임규명을 위한 금천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엄셋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45
----------	------

제안년월일 : 2025년 7월 2일

제안자 : 엄셋별, 고영찬, 도병두 의원

## 1. 주 문

- 금천구 수의계약 구조의 적법성 및 책임규명을 위하여 특정 민간단체와의 반복적·비공식적 협력관계를 점검하고자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고자 함.

## 2. 제안이유

- 2025. 6. 19. 제255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엄셋별 의원이 문화체육과 소관, “뮤지컬 <격쟁>” 계약 당사자(A단체)와 실제 운영자(B단체)의 불일치 정황을 제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동일 단체 또는 실질 운영 주체가 반복적으로 구청 사업에 개입하여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였음.
- 또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천구청은 계약 당사자와 실제 운영자가 불일치함을 인지하고도 사업의 승인·정산 과정에 개입되어 있어, 공공예산의 집행 책임과 계약의 실효성을 무너뜨리고 있음.
- 투명하고 공정한 공익감사를 통해 특정 민간단체와의 반복적·비공식적 협력관계를 점검하고, 금천구 수의계약 구조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규명하여 그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세부사항 별첨 참조

- 동일 단체 또는 실질 운영 주체가 반복적으로 구청의 사업에 개입하여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훼손
  - 2025. 6. 19. 제255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엄셋별 의원이 문화체육과 소관, “뮤지컬 <격쟁>” 계약 당사자(A단체)와 실제 운영자(B단체)의 불일치 정황을 제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동일 단체 또는 실질 운영 주체가 반복적으로 구청 사업에 개입하여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였음.
- 특정 민간단체와의 반복적·비공식적 협력관계를 점검하여 금천구 행정의 사업 승인 및 회계처리 시스템의 적법성과 책임성 규명이 필요
  - 집행부의 사업 승인 및 회계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특정 민간단체와의 반복적·비공식적 협력관계를 점검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 투명하고 공정한 공익감사를 통해 그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의혹 해소
  - 투명하고 공정한 공익감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 4. 근거법규

-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 별첨 1. 공익감사 청구서 1부.(별도송부)  
2. 청구 이유서 1부.(별도송부)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1부(별도송부). 끝.

## 공익감사청구서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25. .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 인 식 (인)	청구인 수	-
	생년월일	1961. 04. 08.	전화번호	02-2627-2776
			직업	구의원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2. 감사대상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3. 감사청구 제목	수의계약 구조의 적정성 검토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특정 민간단체와의 반복적·비공식적 협력관계를 점검			
4. 감사청구 사항	<input type="checkbox"/> 동일 단체 또는 실질 운영 주체가 반복적으로 구청 사업에 개입하여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훼손 <input type="checkbox"/> 특정 민간단체와의 반복적·비공식적 협력관계를 점검하여 금천구의 사업 승인 및 회계시스템 전반의 적법성 및 책임성을 규명 <input type="checkbox"/> 투명하고 공정한 공익감사를 통해 그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의혹 해소			
5. 청구이유	☞ 별지 참조			
6. 기타	해당사항 없음			
7. 관련 증거 자료	① 별지(청구이유서) 1부. ②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부.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본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 감사청구가 청구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청구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감사정보 수집·이용 안내>

감사원은 귀하의 감사청구사항이 각하 또는 기각되더라도 감사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3조에 따라 감사청구 내용을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실시 여부 결정 기간 안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귀하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처리기간”)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대표에게 감사청구의 보완을 요청하여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1)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2) 감사청구사항 또는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경우, (3) 감사청구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4) 유사 감사청구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실시 여부 결정까지 1개월이 경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원은 귀하의 감사청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사실시 여부를 신속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감사원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처리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청구인 대표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수집·이용 등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감사청구 처리를 위한 청구 요건 및 관계 서류 적정성 여부 확인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수집된 개인정보(감사청구서)는 「감사원 기록물 편철·보관 및 보존규정」에 따라 감사청구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보존하고 있습니다.
4.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시에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이용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5년 7월 일

성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서명 또는 날인)

## 청구 이유서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제도임.
- 2025. 6. 19. 제255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업셋별 의원이 문화체육과 소관, “뮤지컬 <격쟁>” 계약 당사자(A단체)와 실제 운영자(B단체)의 불일치 상황을 제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동일 단체 또는 실질 운영 주체가 반복적으로 구청 사업에 개입하여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였음.
- 특정 민간단체와의 반복적·비공식적 협력관계를 점검하여 금천구 수의계약 구조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규명하고자 함.
- 투명하고 공정한 공익감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 의회의 수사·조사권의 한계로, 행정사무감사 중 밝혀낸 사항과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실제적인 진실을 밝히고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또는 부작위 행위 여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밝혀내기 위함임.